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74
----------	------

2021년 6월 23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5. 25.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5. 31.

다. 상정 일자 : 제30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1년 6월 2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시의회사무처의 설치, 지휘·감독체계 및 사무처장의 직급에 관한 조문 및 체계를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무처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그 밖에 사무처의 설치 및 지휘·감독체계에 관한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2조 및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5. 13. ~ 5. 18.) 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 첨부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이하 “법”) 제90조부터 제92조에 따른 사무처장 직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무처 설치, 지휘·감독체계 등 일부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법적 통일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음.

2 사무처장 직급 삭제 및 지휘·감독체계 등 정비(안 제2조 등)

- 시·도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두며(법 제90조),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함(법 제92조).
-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별표 4에 따라 서울시의회사무처장의 직급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를 제정·운영해 오고 있으며, 사무처장의 직급은 지방관리관으로 규정함.
- 본 개정안은 사무처장의 직급을 삭제하고¹⁾, 현행 조례 제2조(사무처의 설치), 제3조(사무처장)에 규정된 사무처 설치와 지휘·감독체계 등을 하나의 조항으로 정리한 후 현행 제3조를 삭제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1) 한편, 본 개정안과 같이 사무처장 직급을 삭제하더라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별표 4, 현행 조례 제6조에 이미 사무처장의 직급에 대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해도 무방함.

법적 통일성과 적합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등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²⁾

<표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p> <p>② 사무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p> <p><신 설></p> <p>제3조(사무처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처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p> <p>③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조 ~ 제8조 (생 략)</p>	<p>제2조(사무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③ 사무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3조 ~ 제7조 (현행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p>

○ 한편, 안 제2조에서 사무처장 직급을 삭제한 것은 사무처장을 개방형 직위(1호)로 지정해 운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³⁾

2) 참고로, 17개 광역의회 중 사무처장의 직급을 조례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 2개뿐이며, 나머지 14개 의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입법, 예·결산, 행정사무감·조사, 의사운영 및 정책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 전반의 업무를 총괄함. 서울시의회는 사무처장의 전문성 확보와 인사권 독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 의회사무기구의 장인 사무처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의회 최초의 시도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신속한 채용절차 추진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의정활동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인사권 독립 등을 규정한 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사무처장 직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무처 설치와 지휘·명령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법적 통일성과 적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무처장을 개방형(1호) 직위로 지정·운영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등 그 목적이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방형 직위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법 시행(22.1.13.)을 위한 제반 사항의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위하여 사무처장 직위를 개방형(1호)으로 지정·운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집행부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음. 이와 관련한 의회사무처의 추진계획은 붙임 참조.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74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시의회사무처의 설치, 지휘·감독체계 및 사무처장의 직급에 관한 조문 및 체계를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무처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그 밖에 사무처의 설치 및 지휘·감독체계에 관한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2조 및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5. 13. ~ 5. 18.) 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사무처의 설치)”를“(사무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p> <p>② 사무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p> <p><신 설></p> <p>제3조(사무처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처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p> <p>③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조 ~ 제8조 (생략)</p>	<p>제2조(사무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③ 사무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3조 ~ 제7조 (현행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p>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의 설치와 사무처장의 직급규정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여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의 설치와 사무처장의 직급규정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행정6급 박미진(☎ 2133-6633)